

南北交流協力,
어떻게 이루어지나



國土統一院

머 리 말

정부는 『7·7宣言』이후 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南北交流協力에 관한特別法』을 성안,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南北交流協력을 위한 법제는 既存法體系 전반을 신중히 검토한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그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국민들의 南北交流協力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尙當한 節次를 거쳐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特別法이 완비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行政內部指針으로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基本指針』을 마련하여 6월 12일 大統領 特別指示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基本指針의 要旨와 제기된 문제에 대한 解説 그리고 基本指針의 全文을 수록 하였습니다.

有益한 資料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目 次

I.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要旨…… 1

II.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解説…… 4

III.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全文…… 17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要旨

기본방향과 교류협력의 대상분야

南北交流協力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지침은 南北交流協력을 남북한 주민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시행절차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시행절차

남북한 주민간 접촉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의 會合, 通信交流 등의 접촉은 인적왕래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國土統一院長官의, 협력사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該當主務部處長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물자교역을 위한 접촉은 사전 또는 사후에 商工部長官(또는

在外公館長)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인적왕래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북한주민초청 및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土統一院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자교역 또는 협력사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신청은 남한의 초청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자교역

남북한간의 물자의 搬出入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商工部長官이 결정한 기준에 따라 輸出入 承認機關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간주,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고, 再輸入減免 규정의 혜택도 받도록 하였다.

협력사업

남북한간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主務部處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북한측과의 협의도 해당주무부처장의 事前承認下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 타

在外國民의 경우에는 人的往來 및 接觸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在外公館長에게 申告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南北交流協力の 促進과 효율적 推進을 위해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南北交流協力推進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民間機構에 委任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南北交流協력에 관하여 南北한 當局간 별도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解説

1. 기본지침제정의 背景

정부는 『7·7宣言』발표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1989년 2월 13일 제145회 임시국회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을 提案한 바 있다.

南北間 交流協력이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7·7宣言』은 국민모두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등 이의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절차상의 문제와 또한 신중히 推進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등의 문제로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南北交流協력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요구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바, 정부도 이와같은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해야할 책무를 가진 정부는 국민들의 交流協力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것이 질서있게 推進되도록 절차·기준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처간의 수차례 協議를 거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을 마련하였다.

南北交流協力は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러한 틀속에서 推進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법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정부는 부득이 이제까지 論議되었던 節次등 제반문제를 종합하여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처리하는 잠정적인 行政內部指針을 마련한 것이다.

基本指針은 『7·7宣言』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南北交流協력이 統一政策의 推進主體인 政府의 承認과 指導아래 질서있게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民族共同體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근본 취지를 담고있다.

현 법제도상 북한과의 交流·協력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7·7宣言』에서 북한과 같이 南北間 交流協力을 推進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同 基本指針은 大統領의 特別指示 형식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헌법에서 大統領에게 부여된 책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적 근거만 가지고 현안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이 제정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2.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남북한주민간 접촉”이란 무엇이며, 북한주민의 대리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남북한주민간 接觸이란 아측 주민이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제3국이나 판문점 등지에서 직접 회합을 갖거나, 서신·전화·방송보도 등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인적왕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예비행위나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기위한 會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代理人이란 북한으로부터의 권한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인적왕래, 협력사업 주선을 목적으로 아측주민과 接觸하는 자(법인·단체 포함) 또는 아측 주민과 북한간 연락을 중개하는 자(법인·단체 포함)를 말하는데 주로 해외동포, 외국인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남북한주민간 接觸을 정부의 事前承認아래 推進하도록 한 것은 북한이 南北交流協力을 빙자하여 아측 주민들에게 工作的 次元에서 접근하는 경우 및 일부 국민들이 本 指針에 정한 정부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海外旅行 自由化를 이용하여 제 3국에서 북한주민과 會晤를 갖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체육경기, 學術會議 등의 참가를 관계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南北物資交易을 위한 상담, 해외여행중 북한주민과 우연히 만난 경우 등 사실상 사전승인이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장이나 관계부처의 장에게 申告하는 것으로 接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협력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남북한간 協力事業으로는 우리 말, 역사 등에 관한 남북학술회의, 공동유물탐사, 유물교환전시, 남북체육대회,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구성 참가, TV프로그램 공동제작, 남북음악제, 경제분야의 공동자원개발, 합작투자, 기술원조, 기술개발, 관광개발, 해외공동투자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남한과 북한간의 협력사업 외에도 제3국 참가하에 행하는 협력사업,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국내기업의 海外現地法人이나 국내에 있는 外國法人이 북한과 행하는 협력사업도 포함된다.

사실 협력사업의 추진은 東·西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적·물적교류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협력사업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한 남북한 當局間의 일정한 合意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나,

정부는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協力事業에 대해 북한이 信賴할 수 있는 보장을 하고 사업의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에 肯定的 側面이 있다면 과감히 이를 승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본 지침에서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나 협력사업의 승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어느 곳을 말하는가?

본 指針은 南北交流協力이 각 분야별로 專門性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 각 부처의 기존업무 체계와 一貫性을 갖게 하기 위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한주민간 접촉 및 협력사업의 승인을 현재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불명확하거나 협력사업의 내용이 여러부처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國土統一院長官 또는 관계부처 중 한 곳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서 주무부처를 지

정하여 신청내용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5.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북한방문이나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가능하게 한 것은 국내거주주민과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실효성은 있는 것인가?

居住旅券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란 永住權(美法體系)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長期滯留許可(유럽法體系)를 득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우리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외국인에 가까운 법적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거주주민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大韓民國의 對人高權 즉 관할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정부는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동향을 파악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전 및 사후에

在外公館長에게 申告토록 한 것은 이에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한편 이들도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북한을 방문해서 政治的 活動을 하는 등 民間次元의 교류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旅券法, 出入國管理法에 의한 行政制裁를 받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므로 그 실효성은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6.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政府는 통일정책의 推進主體로서 南北交流協力を 주관해 나가되,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南北交流協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基本方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와 民間交流協力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의 代表性과 專門性을 갖춘 民間機構나 團體 등에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회담 및 연락업무, 왕래 및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접수, 대표단 선발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와같이 大韓赤十字社, 體育會, 南北學生交流推進委員會 등에 이산가족, 운동선수, 학생 등의 왕래를 위한 남북회담 및 연락업무, 서신접수, 대표단 선발 등을 위임한 것을 들 수 있다.

7. 본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운영제도』 (1988. 10. 18)와 『경제인교류지침』 (1988. 12. 15)은 어떻게 되는가?

본 지침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존의 지침은 본 지침에 흡수되거나 폐지된다.

본 지침은 南北物資交易을 商工部가 制定한 『南

北物資交流運營制度』(1988. 10. 18)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본 지침에 모든 人的往來는 國土統一院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인 교류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상공부의 『經濟人交流指針』(1988. 12. 15)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廢止된다.

8. 본 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어떤 원칙아래 추진해 나갈 것인가?

南北交流協力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原則과 方法에 대해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南北對話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간 협정없이도 실현가능한 교류협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도 이에 상응

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자는 것이 「7·7宣言」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우리의 노력을 對南工作的次元에서 이용하여 그들의 이념과 체제에 호의적인 일부 재야인사, 단체만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사실상 국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국론분열과 정부·민간간 대립을 획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이 당초 의도대로 南北關係改善과 民族共同體의 回復·發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은 政府主導下에 推進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憲法上義務와 權限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교류협력을 예방하고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국민적 합의인 것이다. 본 지침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정부의 승인과 지도아래 추진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憲法精神과 南北關係 現實에 基礎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政治性이 排除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성이 전제된 바탕위에서 인도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상호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논의될 경우 이는 남북관계에서 책임있는 당국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은 相互性의 原則하에 推進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7·7宣言』에서 북한을 同伴者로 인식하여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 것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7·7선언』과 본 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北韓의 同意와 相應한 措置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상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

고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신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진정한 南北交流協力の 實現과 우리 사회의 自由民主體制 守護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全文

1. 南北交流協力推進 基本方向

- 가. 南北交流協力は 『7·7宣言』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 나. 南北交流協力は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民族同質性 회복 및 平和統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다. 南北交流協力は 통일정책의 推進主體인 政府의 承認과 指導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施行方針

가. 目的

- (1) 본 지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特別法』등 관계법령 정비이전까지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用語의 定義

(1)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南韓’이라 함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을 말하며, ‘北韓’이라 함은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을 말함.
- ‘南韓住民’이라 함은 南韓에 籍을 둔 주민(법인·단체포함, 이하 같음)을 말하며, ‘北韓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籍을 둔 주민을 말함.
- ‘人的往來’라 함은 남북한간 주민의 친척방문, 관광,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위한 相互訪問을 말함.
- ‘物資交易’이라 함은 남북한간 물품의 搬出·搬入을 말함.
- ‘協力事業’이라 함은 남북한간(제3국참가 포함) 문화·체육·학술·경제(자원개발, 합작투자, 기술원조, 기술협력, 관광개발, 공동해외투자 등)분야 등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함.

다. 南北韓 住民間 接觸

- (1) 인적왕래, 협력사업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남북한 주민간 接觸(會合·通信交流 包含, 이하 같음)은 정부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라. 人的往來

- (1) 남북한간 인적왕래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大統領令 12670호, 1989. 3. 31)의 심의를 거쳐 國土統一院長官이 승인함.

마. 物資交易

- (1)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정부가 既發表(1988. 10.18), 시행하고 있는 「南北物資交流運營制度」에 따라 시행함.

바. 協力事業

- (1)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심의를 거쳐 主務部處의 長이 승인함.

사. 在外國民의 人的往來 및 接觸

- (1) 居住旅券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事前 및 事後에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함.

아. 當局間 合意에 의한 南北交流協力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事項의 委任

- (1) 政府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정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사항을 民間機構 (법인·단체포함, 이하 같음)에 委任할 수 있음.

차. 南北交流協力の 管理・支援

- (1) 國土統一院長官은 남북교류협력에 따르는 通信, 通行, 身邊安全 등에 관한 管理・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相關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카. 南北交流協力の 秩序維持

- (1) 政府는 남북교류협력 내용이 본 지침의 기본방향과 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기타 必要的 措置를 취할 수 있음.
- (2) 政府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류협력의 결과에 대한 報告書 提出 등 사후 管理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施行節次

가. 南北韓 住民間 接觸

(1) 南北韓 住民間 接觸의 承認

- 人的往來 또는 其他 目的(물자교역, 협력사업 제외)을 위해 北韓住民 또는 그 대리인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國土統一院長官에게 승인을 신청함.
- 協力事業을 목적으로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主務部處의 長에게 승인을 신청함.
- 승인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남북한 주민간 접촉의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南北物資交易을 위해 북한주민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在外公館長 또는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함.

나. 人的往來

(1) 北韓訪問 承認申請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訪問豫定日 4週前까지 방문목적에 따라 해당 주 무부처를 경유하여 國土統一院長官에게 북한방문 승인을 신청함.
- 北韓訪問 承認申請 節次 및 具備事項은 國土統一院長官이 定함.

(2) 北韓訪問 承認申請 處理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의 신청사항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북한방문 승인 여부를 결정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북한방문을 승인한 자에게 訪問證明書를 發給함.

(3) 南北住民의 招請

- 북한주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國土統一院長官에게 초청승인을 신청함.
- 물자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주무부처를 경유 國土統一院長官에게 신청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의 신청사항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招請承認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 북한주민의 招請承認 申請節次 및 具備事項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함.

(5)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

-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北韓住民은 國土統一院長官에게 방문 승인을 신청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 신청사항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방문승인 여부를 결정함.
- 국토통일원장관은 남한방문을 승인한 자에게 訪問證明書를 발급함.
-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신청은 南韓의 招請者가 代行할 수 있음.
-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承認申請 節次 및

具備事項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함.

다. 物資交易

(1) 物資交易의 承認申請

- 對外貿易法에 의해 貿易業 許可를 받은 자중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물자를 搬出入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入承認機關의 長에게 승인을 신청함.

(2) 承認申請의 處理

- 승인기관의 장은 商工部長官이 南北交流 協力推進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함.
- 승인기관의 장은 搬出入을 승인한 경우 승인서상에 “南北韓交易 對象物品”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3) 交易物品의 關稅 및 防衛稅 非課稅

- 남북한간 直交易(제3국 단순경유 포함) 물품에 대해서는 內國 物品移動으로 간주하여 關稅 및 防衛稅를 부과하지 않음.

- 제3국으로 수출된 후 남한에 반입되는 북한물품이 關稅法 第34條 規정의 再輸入 減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원용함.

라. 協力事業

(1) 協力事業의 事前承認

-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담당하는 主務部處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 主務部處의 장은 國土統一院長官 및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협력사업의 事前承認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2) 協力事業의 承認申請

- 南北協力事業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主務部處의 長에게 승인을 신청함.
 - 협력사업의 내용 및 방법
 - 事業豫定期間

- 협력사업에 필요한 人員
- 資金計劃
- 북한측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意向書)
- 북한측 사업상대자에 대한 사항
- 북한당국의 확인서
- 기타 主務部處의 長이 협력사업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承認申請의 處理

- 主務部處의 長은 南北協力事業 承認申請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함.
 - 사업의 妥當性和 實現可能性
 - 협력사업과 관련된 申請人의 사업실적 또는 활동내용
 - 기타 協議會의 결정으로 정한 기준
- 主務部處의 長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